야간금고약관

제 1 조 금고의 이용

야간금고는 은행 영업시간외에 현금·수표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합니다.

제2조 입금

- ① 거래처는 입금신청서에 예금주명, 예금과목, 계좌번호, 입금금액 및 일자 등을 적어 통장 및 현금 수표 등과 함께 지정된 입금가방에 넣어 잠그고 야간금고에 넣은 후, 입금가방이 금고 속에 완전히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.
- ② 은행은 영업을 시작할 때 입금가방을 열어 입금신청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금액이 맞는 지를 확인한 후, 확인일자로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.
- ③ 입금신청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금액이 다를 때는 거래처에 알려 확인한 후 입금 합니다.

제 3 조 임의조제 금지

거래처는 은행의 승인 없이 투입구 열쇠, 입금가방, 입금가방열쇠를 만들 수 없습니다.

제 4 조 분실신고 등

거래처는 투입구 열쇠, 입금가방, 입금가방열쇠를 분실 또는 파손한 때는 곧 신고해야 하며 은행이 다시 만들어주거나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합니다.

제 5 조 면책

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넣어 생긴 사고 등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생긴 사고나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 및 제4조의 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가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6조 해약

- ① 거래처가 야간금고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은행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이를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거래처는 거래약정이 해지되었을 때 투입구열쇠, 입금가방, 입금가방 열쇠를 곧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.

제 7조 대여 · 양도 등의 금지

거래처는 야간금고 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, 양도, 매매, 질 권설정 할 수 없습니다.

제 8 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야간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야간금고업무는 2002.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